

2022년 제66회 「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」 계약직(전문의_영상의학과A/B) 직원 모집 공고

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
「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설립된 서울의료원에서는
최고의 공공병원 실현을 위해 함께 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1. 직종별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

가. 직종별 모집 인원

구 분	직종 (직급)	모집 인원	세부 응시자격	담당업무
계약직	영상의학과 전문의A (계약직)	1명	[필수 사항] 1. 의사면허증 2.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	전문의(서남병원 파견) 업무 전반 ※ 직무설명서(첨부파일) 참조
	영상의학과 전문의B (계약직)	1명	[필수 사항] 1. 의사면허증 2.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3. 유방영상의학 전임의 과정 수료자	전문의(유방영상의학) 업무 전반 ※ 직무설명서(첨부파일) 참조
비 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상의학과 전문의A(서남병원 파견) : 계약기간은 임용일자로부터 1년이며,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 조정 가능 • 영상의학과 전문의B(유방영상의학) : 계약기간은 임용일자로부터 1년이며,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 조정 가능 • 추후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조정이 가능하며, 서울의료원은 서울시로부터 동부병원·북부병원·서남병원을 위탁받아 수탁운영 중으로 해당 근무지로 발령받을 수 있음 			

나. 결격사유
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공직자 및 「공직자 윤리법」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,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
-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
2. 근로조건

가. 보수는 서울의료원 규정에 따름

나.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은 「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취업규칙」에 따름

※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은 「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며,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공무원 연금 대상에서는 제외됨

3. 모집방법

구분	내용	
채용방법	인사규정 제15조에 의한 채용	
공고방법	서울의료원 홈페이지	
접수방법	온라인 접수(서울의료원 홈페이지)	
제출서류	① 입사지원서(온라인 채용방식) 1부 ② 자기소개서(온라인 채용방식) 1부	공통제출 (의료원 홈페이지 온라인지원)
	③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(해당자) 1부 ④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(해당자) 1부	1차 합격자에 한해 해당자 제출 (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며,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)
	⑤ 해당 면허(자격)증 사본(해당자) 1부 ⑥ 연구실적(해당자) 1부 ⑦ 경력증명서(해당자) 1부	최종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 (제출방법 등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안내)

4. 시험전형일정

구분	일 정	비고
원서접수	2022.10.07.(금) ~ 2022.10.17.(월) (16:00까지)	• 서울의료원 홈페이지
1차 전형 (서류전형)	합격자 발표 개별통보	
2차 전형 (면접전형)	개별통보	
최종 합격자 발표	개별통보	

※ 원서접수는 서울의료원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서 등록으로 함 (마감 16시00분)

※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5. 전형기준

구분	배점	내용
1차 전형 (서류전형)	55	- 심사기준 : 자격요건 적격여부 판단
2차 전형 (면접전형)	45	- 평가요소 : ①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②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③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④ 창의력·의지력·발전가능성 ⑤ 의료인으로서의 정신자세
최종 합격자 선발 기준		- 1차 전형과 2차 전형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
신체검사 및 인성검사(MMPI)		- 신체검사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신체검사서로 같음

6. 기타사항

- 가. 1차 전형 합격자는 인성검사, 면접시험에 응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불합격 처리됨
- 나.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신체검사를 서울의료원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미검사 또는 이상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- 다.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르거나 채용 과정 중 불공정 채용에 대한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, 채용절차상 안내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임
- 라. 이력서의 주소란에 항시 연락 가능한 현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함
- 마. 응시하고자 하는 직종을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 바람
- 바. 취업보호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전형 및 2차전형 각 만점의 5~10%의 가산이 있음
- 사. 장애인대상자는 장애인고용비율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수첩(복지카드)제출 시 1차전형 점수에서 5점의 가점이 있음
- 아.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, 예비합격자는 최종 성적순에 따라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함 (예비합격자 개별통보)
- 자.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한 달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예비합격자 중 추가합격자를 결정함
- 차. 채용전형 시 제출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(단,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자료 등은 제외)
- 카.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신원조회(조사)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- 타. 이의제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운영팀(02-2276-8099)으로 문의 바람

2022년 10월 07일

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